

충청북도 건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6년 7월 9일

· 회부일자 : 1996년 7월 9일

3. 제정이유

- 가. '95. 1. 5 건축법이 개정되고 '95. 12. 30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'96. 1. 6 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건축조례로 규정하고
- 나. 종전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로 정한 건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는 폐지함.

4. 주요골자

가.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구성 :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의 자격 : 건축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
- 위원의 임기 :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

- 기능 :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도시설계에 대한 심의 등
- 회의
 - 회의소집 : 심의 요청이 있을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- 의결방법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나. 충청북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- 구성 :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의 자격 :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위원의 임기 : 3년이며 연임 가능
- 회의 :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과 기타 운영사항은 건축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
- 비용부담 : 분쟁의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규정 등
 - 감정, 진단, 시험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검사,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
 - 분쟁의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

5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.

1. 건축위원회

- 건축법 제4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승인 건축물
-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및 법 62조의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
- 기타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
○ 구성 및 주요임무

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필요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

○ 임명, 위촉 및 임기

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소속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시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2. 건축분쟁조정위원회

○ 기능 및 주요임무

건축법 제76조의 2 및 시행령 제1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

- 건축주, 설계자, 김리자,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
-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
-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
-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
-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
-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
-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하며,

○ 구성 및 임기

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-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 -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
 -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가능케 하였으며,

○ 비용부담

-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, 진단,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범위는
 - 감정, 진단, 시험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검사,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
 - 분쟁의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

3. 기존 조례와의 관계

- 이 조례의 제정으로 "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"를 폐지하며 건축행정의 전문화와 분쟁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당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